B2B구매론 이용약정서(판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3조 <기재 생략> **제4조 (승인명세의 지급보증,취소,변경및제한)** ① 승인명세에 대한 지급보증,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 1. ~ 5. <기재 생략> 6. 은행은 MP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전문이 접수되는 경우,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하기로 하며, 취소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<신설> 7. ~ 10. <기재 생략> ②<기재 생략> **제5조 ~ 제12조 <기재 생략>** **제13조 (면책)**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<신설> ② <기재 생략> **제14조 ~ 제15조 <기재 생략>** <신설>	**제1조 ~ 제3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4조 (승인명세의 지급보증,취소,변경및제한)** ① 승인명세에 대한 지급보증,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 1. ~ 5. <현행과 동일> 6. 은행은 MP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전문이 접수되는 경우,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하기로 하며, 취소로 인한 <삭제>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 7. ~ 10. <현행과 동일> ②<현행과 동일> **제5조 ~ 제12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13조 (면책)**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<삭제>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 ② <현행과 동일> **제14조 ~ 제15조 <현행과 동일>**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	- 약관변경 권고 반영 - 약관변경 권고 반영